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청소행정과)

의안번호	제252호
제 출 자	정해숙 의원 외 11명(2024. 2. 1.)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오수,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나.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규정을 삭제
- 다.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 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정윤주 의원)의 활동 결과에 따라 정해숙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의 변경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목적)¹⁾을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오수,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정의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안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은 **조례의 가산금²⁾** 규정과 상위법인 「하수도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운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법」 제73조³⁾의 가산금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삭제하였음.

- 그 밖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의 21개 조항을 11개 조항으로 축소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 본 전부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3)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 5.]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운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위임된 ----- ----- ----- - 필요한 ----- -----.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시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

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

----- 관할구역-----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시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

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
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
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
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
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
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
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
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
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
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
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
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소통지) ① ----- 관할구역-----

-----.

② ----- 기한 내-----

----- 하며, 촉구
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
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
월 이내) 및 기한까지 청소
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
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관할구역-----

분뇨수집·운반업자-----
-----.

④ ----- 관할구역-----
----- 구민-----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일 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 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

---- 처리하여야 -----.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 7일부터 -----
----- 수거하여야 -
-. ---- 구민이 요청한 -----

-----.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
--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분뇨수집 등-----

-.

제8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

행) ① -----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

----- 대
행하게 -----.

② 제1항에 따라 -----

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 기간

2. (생략)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생략)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 각 호 -----
-----.

1. 대행기간

2. (현행과 같음)

3. 수집·운반 -----

4. (현행과 같음)

5. 계약해지-----

③ ----- 있어 -----

-----.

④ ----- 있어 -----

-----.

⑤ ----- 제2항에 따라 -----
----- 분뇨수집·운반업자 -----
-----.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생 략)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 (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1. ----- 수집·운반하는 -----
--.
2. (현행과 같음)
3. -----

----- (오수포함)에 -----
-----.

② -----
-----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
----- 분뇨수집·운반 -----
----- 분뇨수집·운반업자-----
----- 분뇨수집·운반업자-----
-----.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

----- 관리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
-----.

<삭 제>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때에
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
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
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
로서 생계가 곤란 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9조-----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

2. -----

----- 그 가
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삭 제>